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4
2. 청탁금지법의 제정 경과	8
3.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10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12
2. 부정청탁의 금지	14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22
4. 위반행위 신고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26
5. 징계 및 벌칙	30

3.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

1. 부정청탁의 금지	32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73

참고 1. 국내외 반부패 입법례 101

참고 2. 청탁금지법 조문 121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현법적 가치의 실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
-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舊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 예방 전 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 능을 전담
-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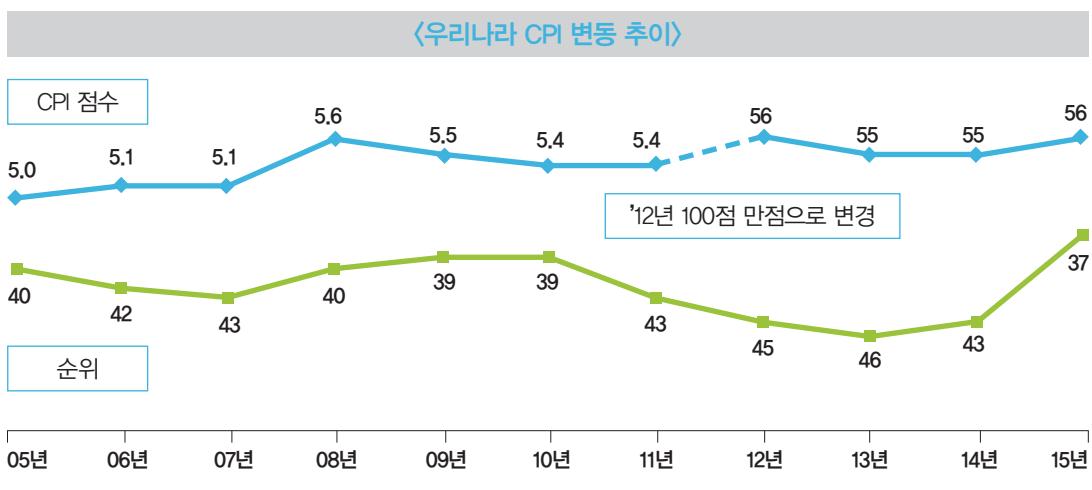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 ·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59.2%에 달함
-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12년부터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 PERC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 (0~10점: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순위/전체 대상국	7/16	6/16	9/16	11/16	10/17	9/16	9/16	8/16

□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175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행위 자체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 다양화 · 은밀화 ·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은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해 시에만 처벌 ●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 적용 대상을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 필요적 징계로 강화 ●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설치 · 운영, 부패 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부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 필요
 -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일반 국민(36.3%), 공무원(46.1%), 기업인(42.3%), 외국인(33.8%)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뿌리 깊은 청탁 관행
 - 우리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한 끈끈한 관계 맷음으로 구성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은 뿌리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

- 청탁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비공식적 절차와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곧 상호불신으로 연결
- 고질적인 접대문화
 -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형태로 제공
 -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의 50.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 유지, 관행 등을 이유로 제공"하였다'고 답변
 -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

2

청탁금지법의 제정 경과

▣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까지('11.6월~'13.8월)

- '11.6.14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익위안 마련
 - '11.10.18 제1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주민의 의견 수렴
 - '12.4~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 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 정부 입법 절차 진행
 - '12.5~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137번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불명확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보완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 국회 제출 이후 제정 · 공포에 이르기까지('13.8월~'15.3월)

-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 박근혜 대통령도 '14.5.19 세월호 대국민 담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15.1.8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의결,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 공포
- '16.9.28 시행 예정

3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 · 공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 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Q | A

-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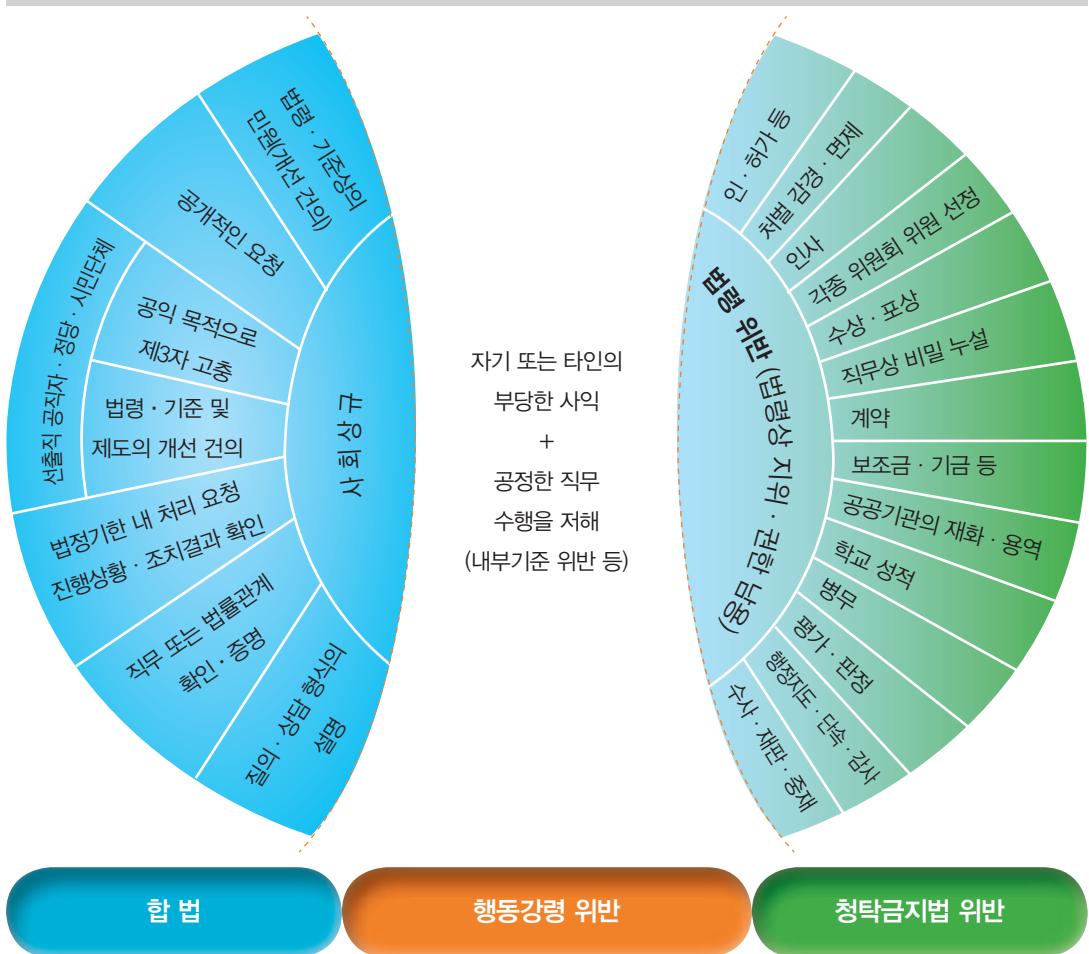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 · 허가 · 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직무
- 채용 ·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 탈락 직무
- 각종 수상 · 포상 등의 선정 · 탈락 직무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 · 기금 등의 배정 ·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 청탁 유형별 적용 규범 〉



14가지 외의 직무		14가지 직무				
법령 + 기준 부합행위	법령 또는 기준 위반행위	기준 위반행위	법령 위반행위	사회 상규	법령 · 기준상 절차에 따른 요구	
					공개적인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 · 기준 · 제도 개선 요구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또는 진행상황 등 확인	
					직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 · 증명	
					질의 · 상담 형식의 설명 요구	
합법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상 합법행위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행위 유형 (제5조제1항)〉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배정 ·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 ·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부정청탁 예외사유 (제5조제2항)〉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 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 사규 ·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 A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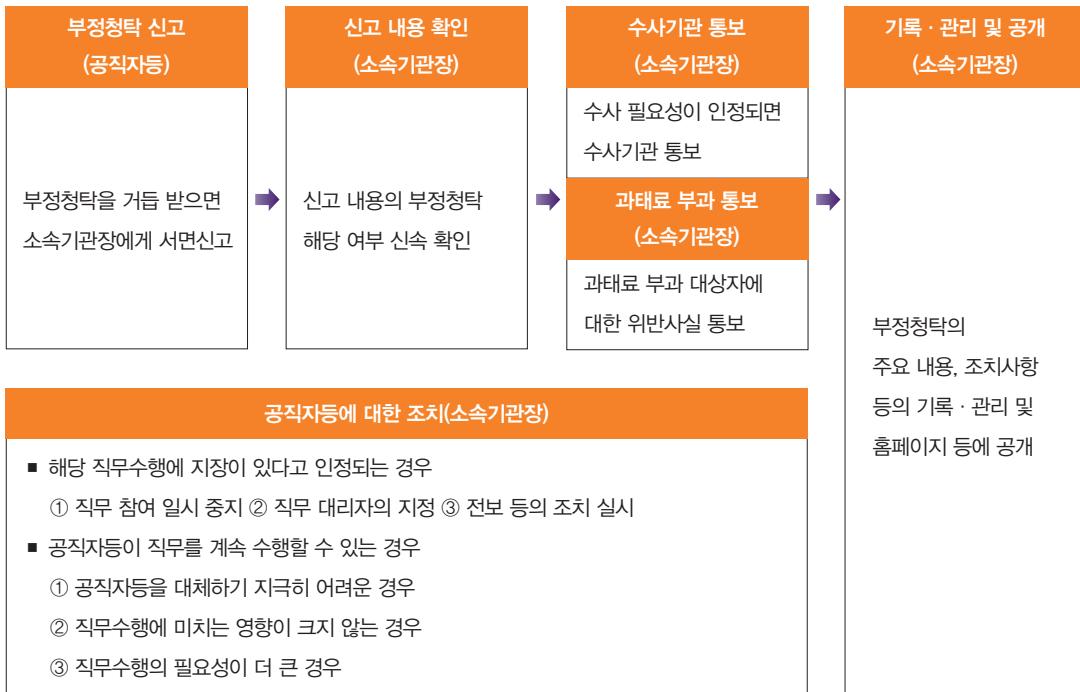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해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 · 조치사항 등을 기록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수행 가능

Q | A

-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Q

A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 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 A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 〉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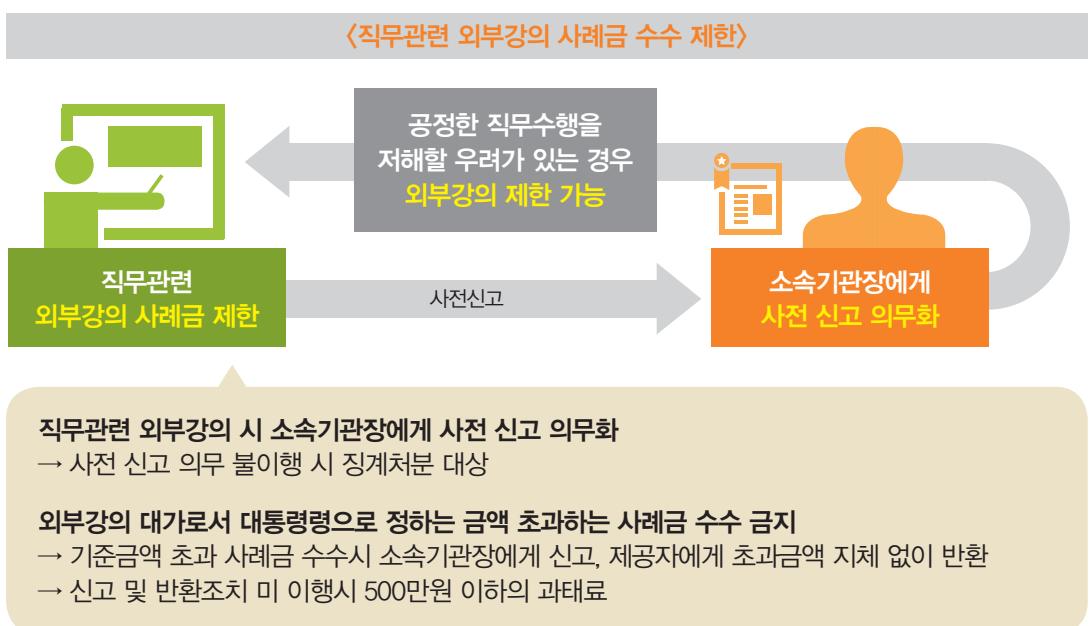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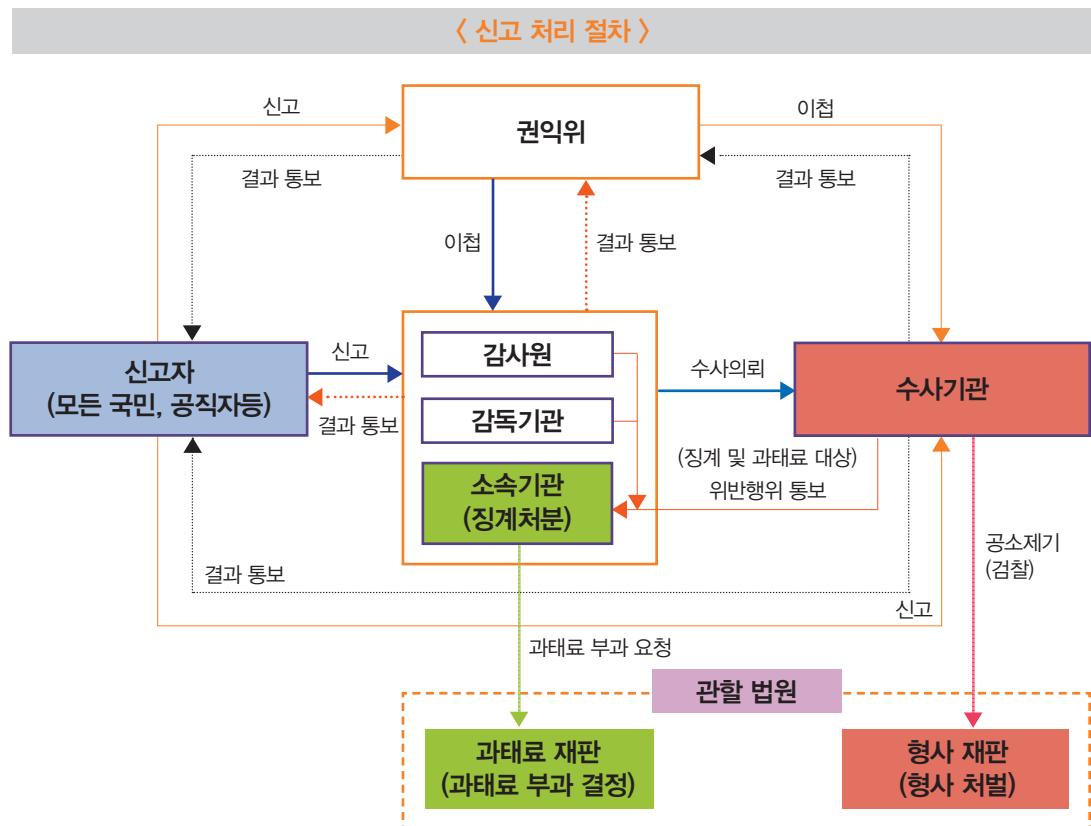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4

위반행위 신고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 · 처리 절차



▣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조)

▣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Q A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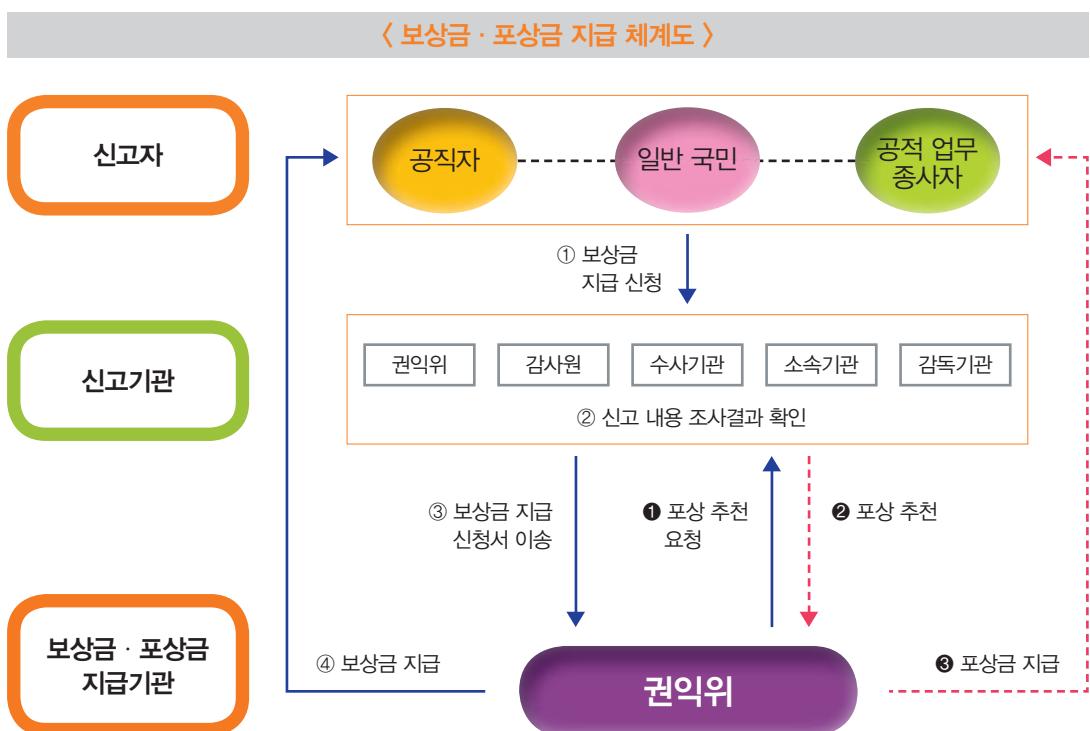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 〉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 · 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을 준용

5

징계 및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공직자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 · 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자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Q A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3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는 청탁금지법만을 적용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고,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급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례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I | 부정청탁의 금지

▣ 개요

-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
 - 청탁 관행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해
 - 공공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초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
- 관행적인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통제 · 관리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으로 규정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
 - ※ 인 ·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
 - 기존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은 금품등 수수와 결부된 청탁에 한하여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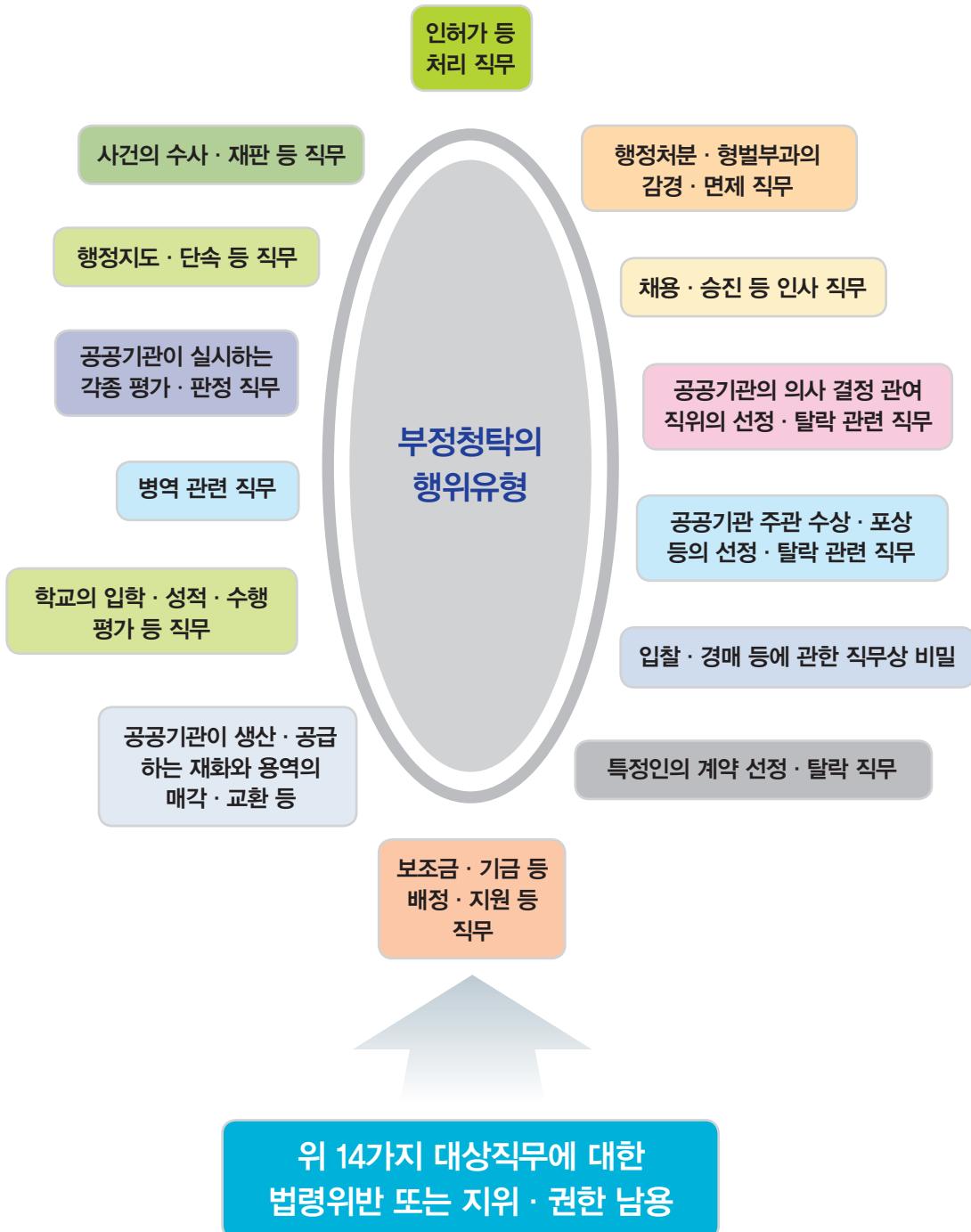
청탁행위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례

- 「공직자윤리법」(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국민참여재판법」(국민투표 시에 다수인 매수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 벌금)
- 「국민투표법」(국민투표 시에 다수인 매수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 벌금) 등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
 -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 분야의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 한편,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7가지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
 - 국민의 민원제기 위축,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할 우려 등 부작용 최소화

▣ 부정청탁 예외사유

- 부정청탁 금지 예외사유는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예외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행위의 방지 및 전반적인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중요
-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 방법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예외사유
 -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제4호)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제5호)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제6호)
- (제2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으므로 예외사유로 규정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상 그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
- ※ 공개는 물리적 ·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의미
- (제3호)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등의 경우 주체, 목적, 대상 및 행위의 제한이 있음
 - 주체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 한정되고,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아닌 직원 · 회원 개인이 전달하는 행위는 제외
 - 공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및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나,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 같은 특정 개인의 특혜 목적인 경우는 제외
 - 고충민원 전달 또는 법령 · 기준 및 제도 등의 개선 요구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제8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 입법 기술상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불확정 개념을 사용
 -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이고 그 개념이나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



〈법률의 내용〉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 경매 · 개발 · 시험 · 특허 · 군사 ·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배정 ·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 배제 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 ·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 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 사규 ·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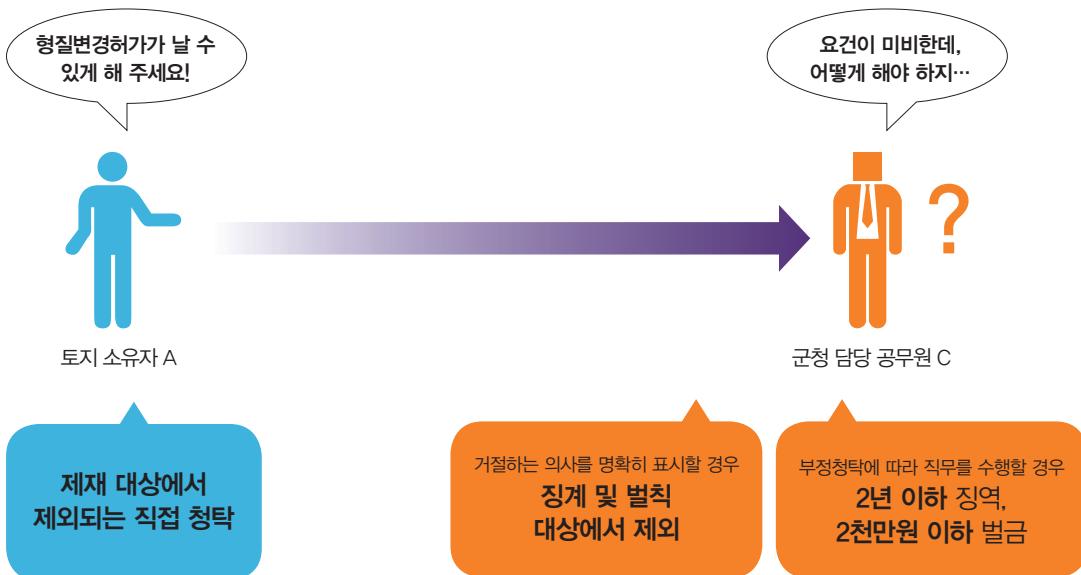
1

부정청탁 행위 유형 관련 사례

사례
1-1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 ·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이하 “도시 · 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정청탁의 금지 ▶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 대상에는 해당함

– 여기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이익 또는 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직접하는 부정청탁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하는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담당 공무원 C는 토지 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토지 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수행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대응 방법

- (최초)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되고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만으로 제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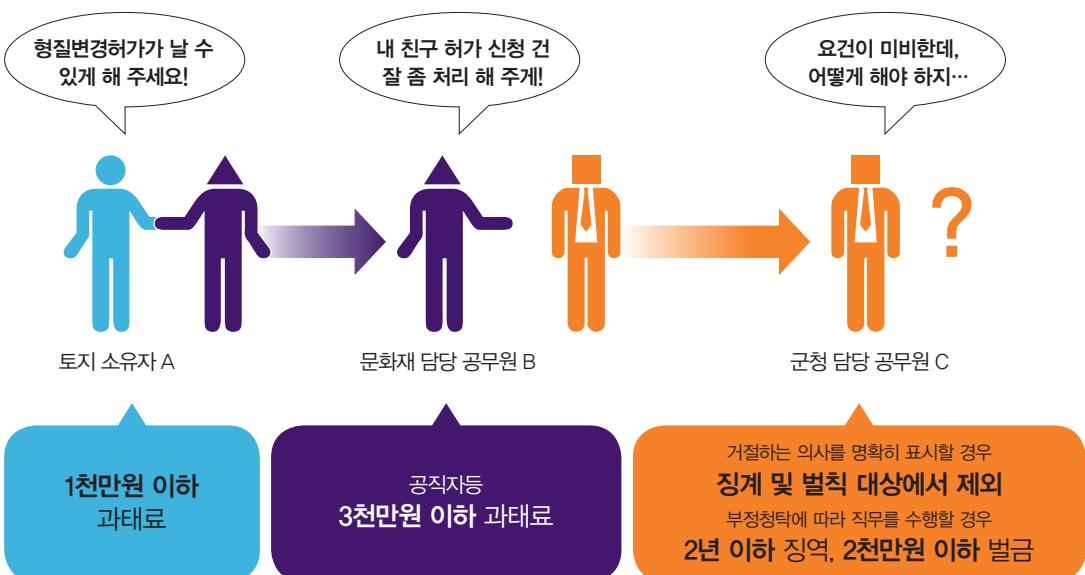
- (반복)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

- (취지) 거절 의사 표시 및 신고 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례
1-2

제3자(공직자등)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연고 · 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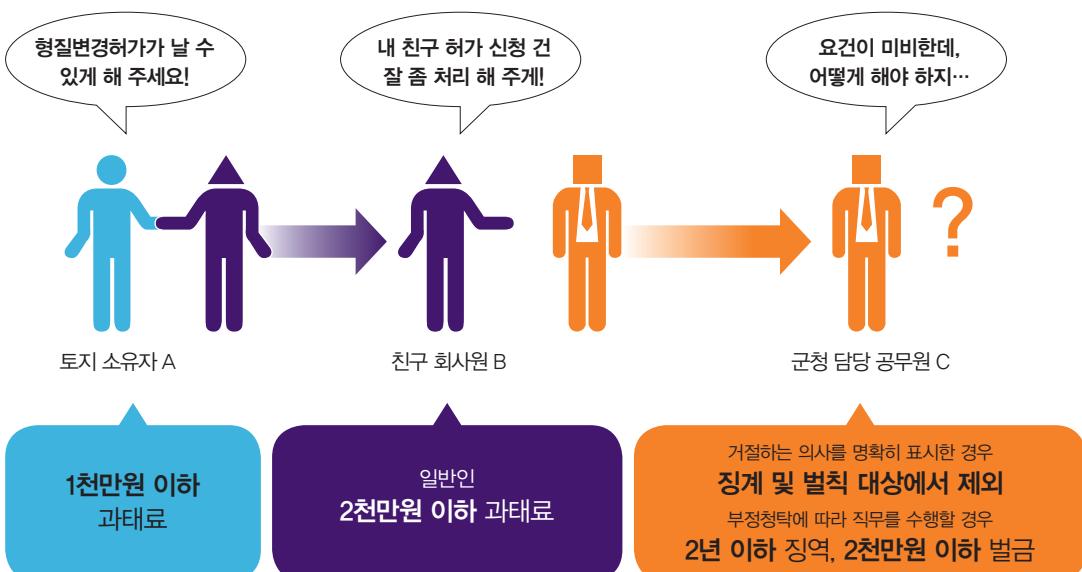
제3자의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무거운 이유

- 우리사회의 연고주의 · 온정주의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탁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원인이 됨
- 따라서 부정청탁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를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임

사례
1-3

제3자(일반인)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인가 ·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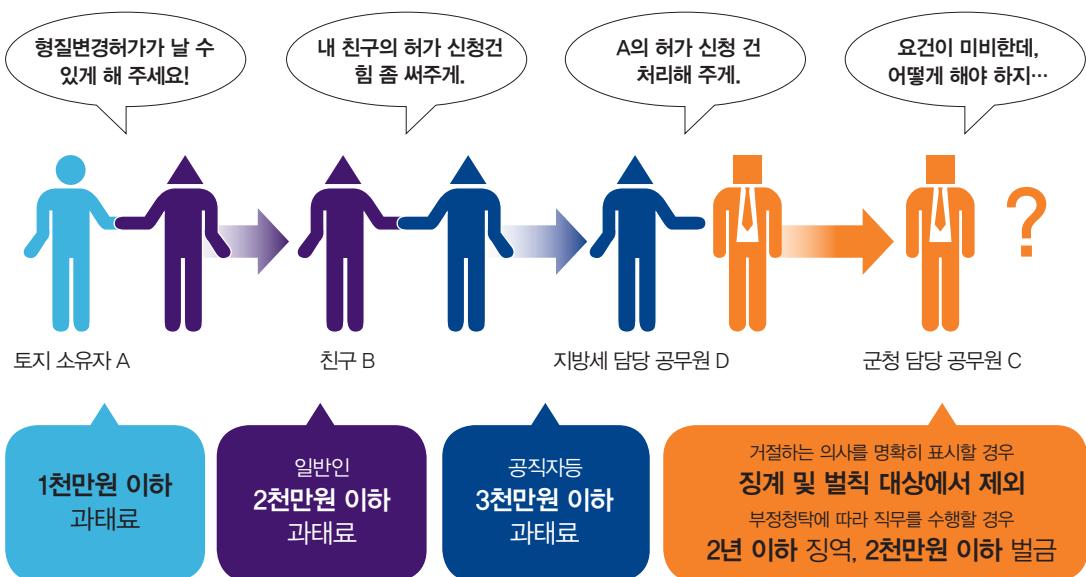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

- 친구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제재가 가중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지인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4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 ·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 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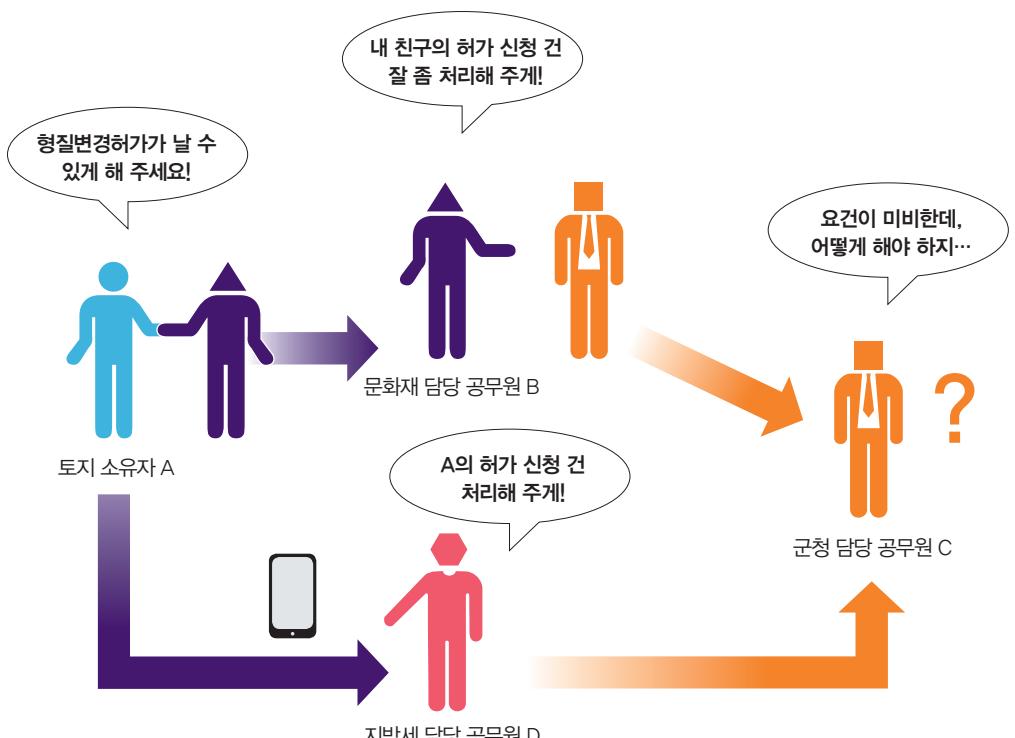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5

동일한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동일한 부정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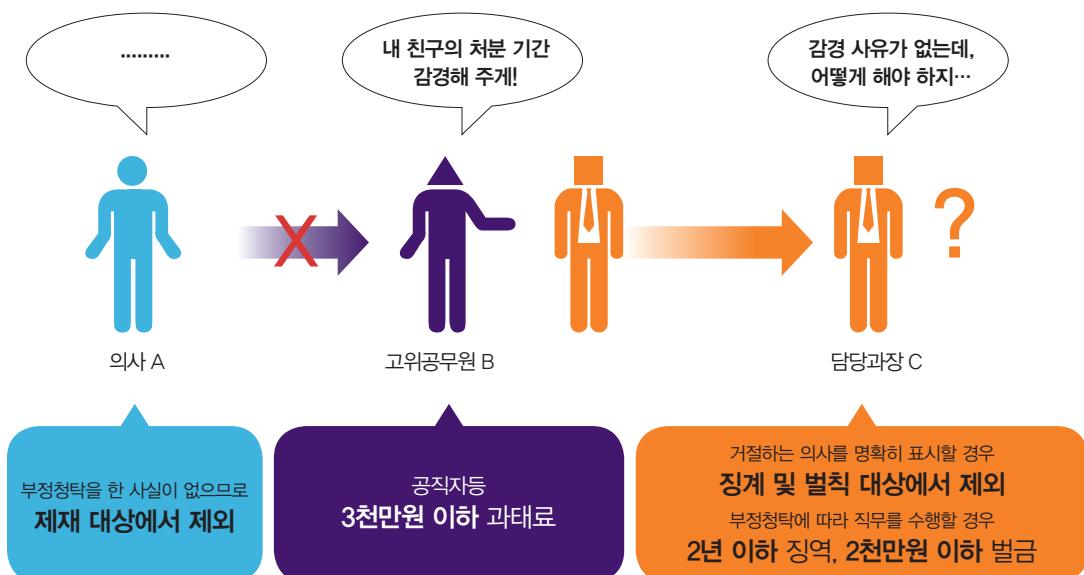
- (취지)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판단기준) 신고의무가 있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선량한 공직자등의 보호를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 청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여러명이 청탁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부정청탁 방지 효과 저하
 - 부정청탁을 하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체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 공무원 C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처분 감경 부정청탁

○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 ◇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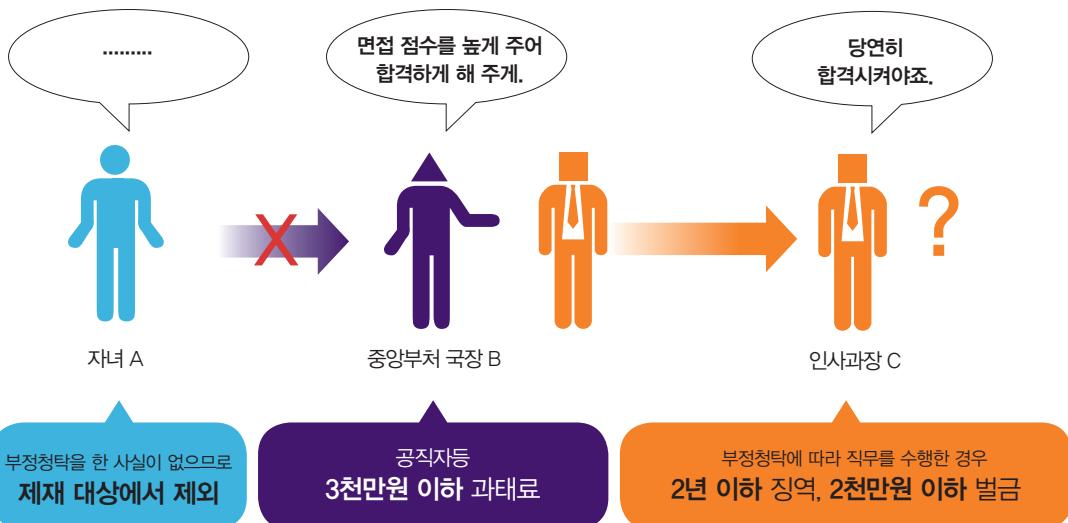


-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
-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반면,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3.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의 위반도 포함
 -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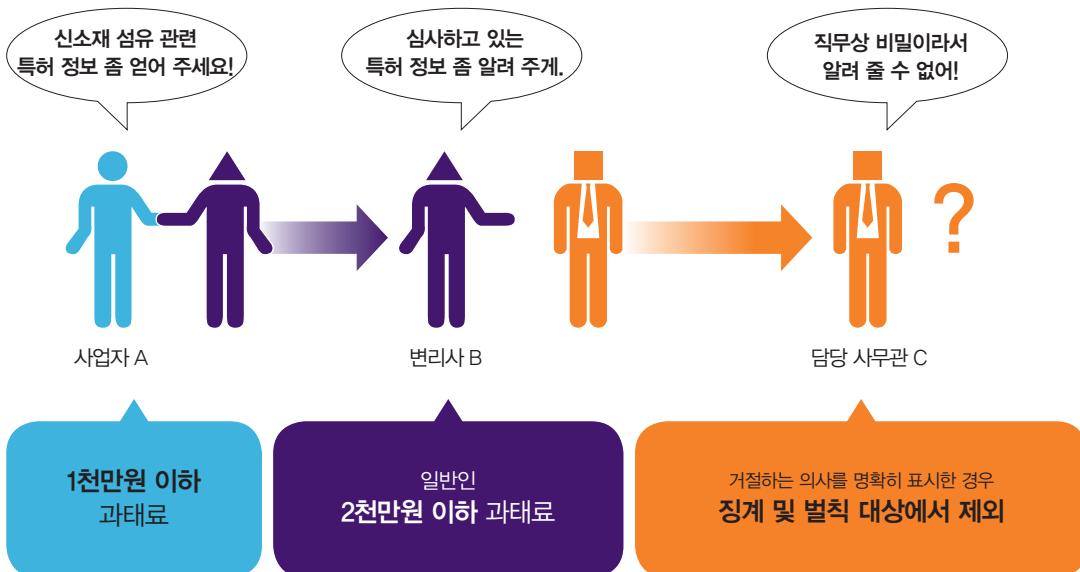
-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 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 · 불 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4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 특허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입찰 · 경매 · 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

-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 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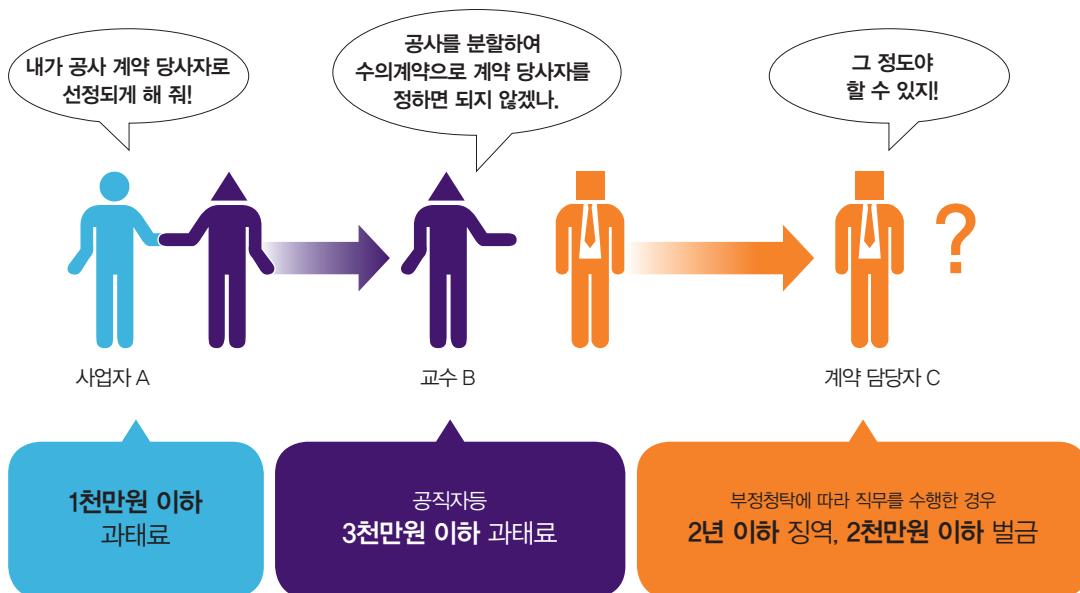
-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됨
-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예방

사례

5.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 계약 당사자 선정에 관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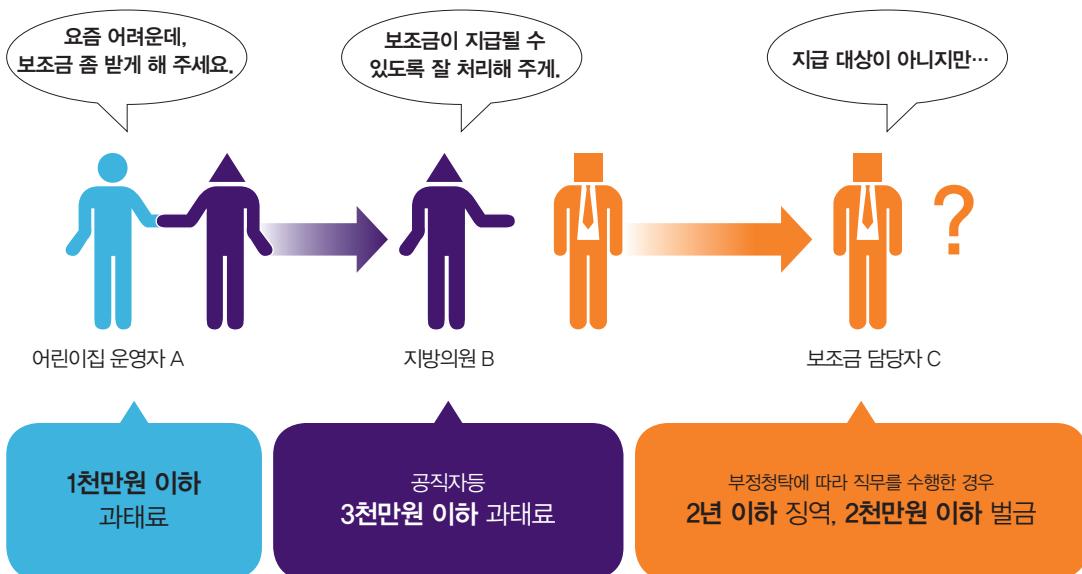
- 교수 B는 제3자인 건설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자 A는 제3자인 교수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담당 직원 C는 교수 B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6.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 청탁에 해당
 -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지방의원 B는 제3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 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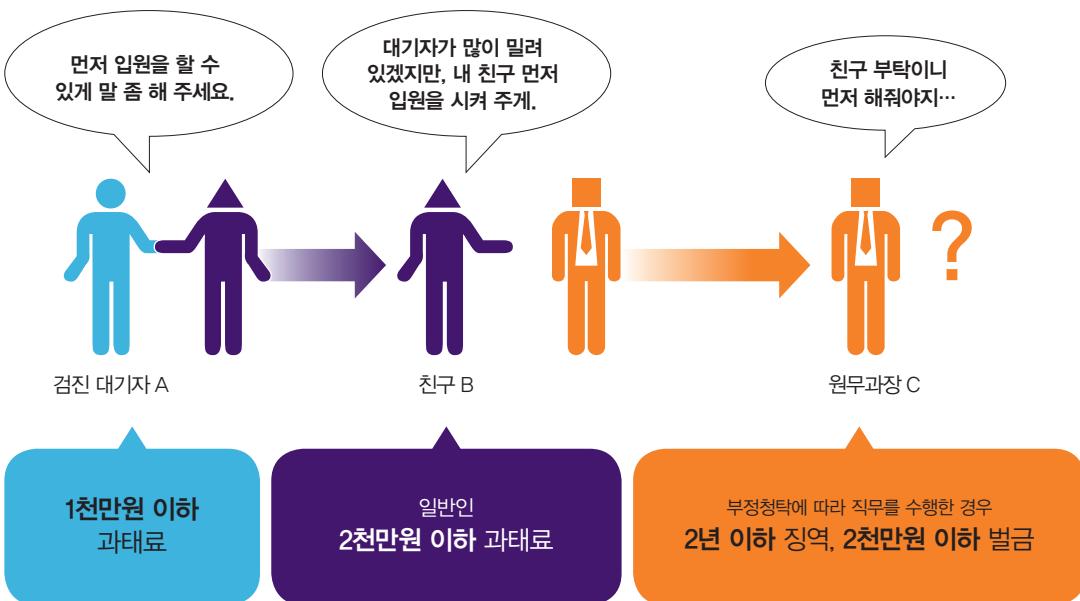
- 지방의원 B¹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
 -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 또한, 지방의원 B가 전달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으로 보기도 어려움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담당 공무원 C는 지방의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7.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

- (취지)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
- (의미)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사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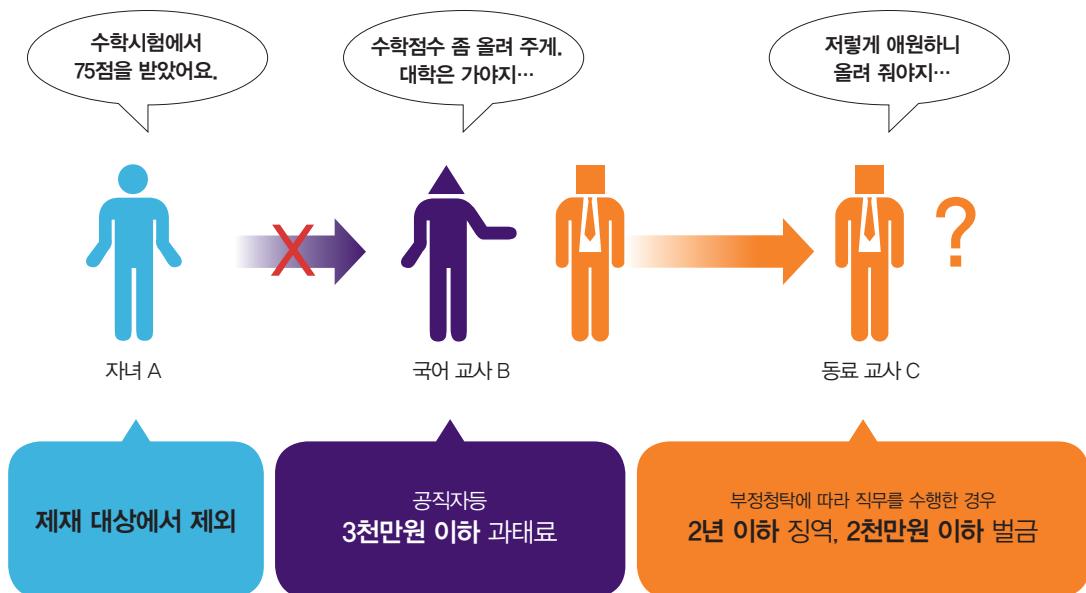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8.

학교 성적 부정청탁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 89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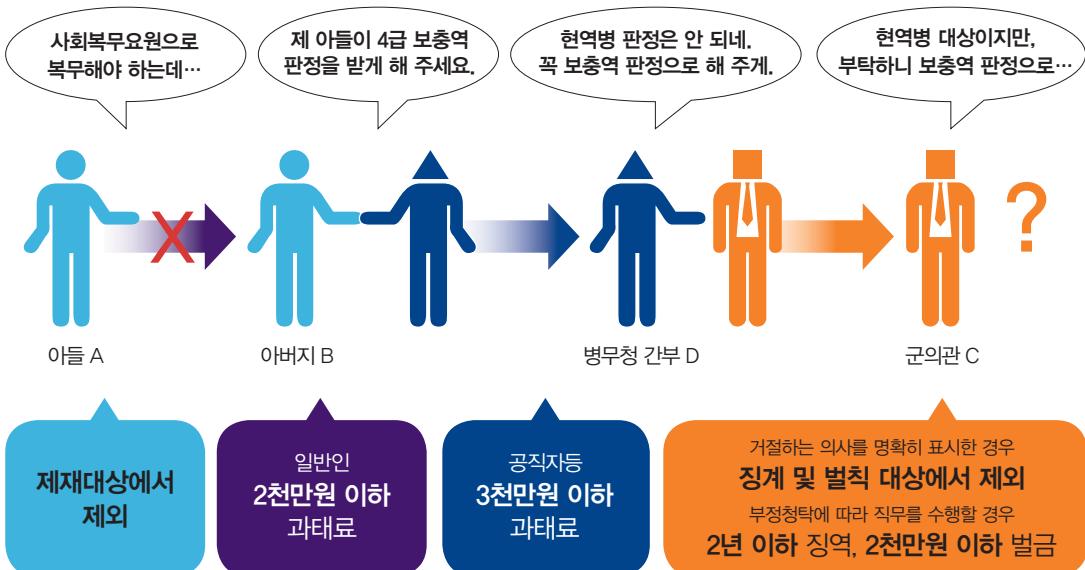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사례

9.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 병역 판정검사(신체등위 판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이란 청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의미하고, 여기서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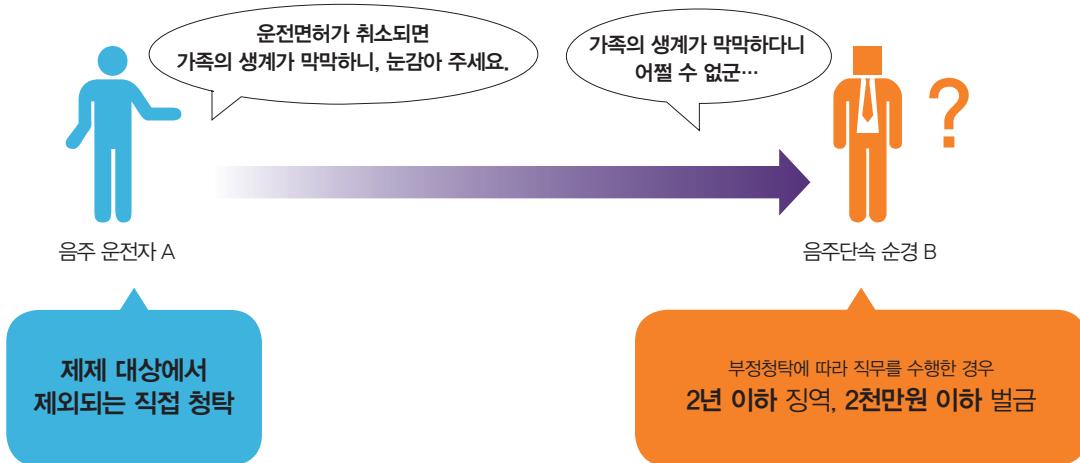
-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0

단속결과 끝인 부정청탁

- ○ 파출소 순경 B는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 ·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B가 이를 끝인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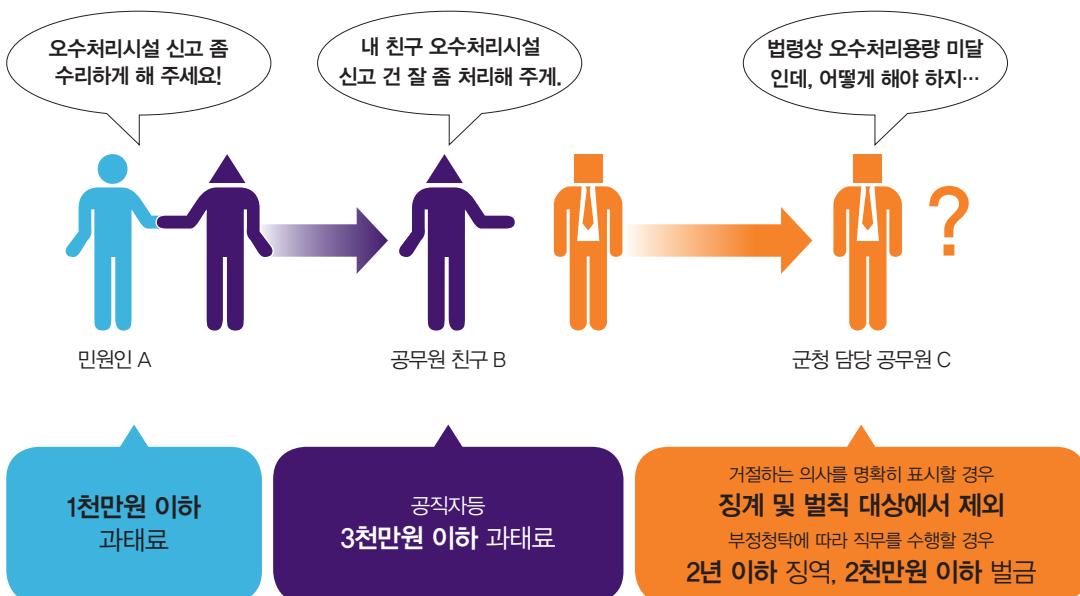


-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끝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 음주운전자 A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 대상에는 해당함

- 위법사행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이익이나 효과가 이해당사자인 음주운전자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직접 청탁에 해당
- 순경 B가 음주운전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적발 사실을 묵인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순경 B의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성립 가능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정청탁

100m²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는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5m³/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 A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C에게 청탁한 경우



-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도 법령에 포함
 - 위 고시상 100m²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m³/일’의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 산정식	비고
3	판매 및 영업시설	음식점	일반음식점	70 ℥ /㎡	550	중식	N =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 민원인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친구 B는 제3자 민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가 친구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친구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의 의미

법령의 범위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009. 7. 30. 전원재판부 2007헌바 75).

■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또한,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예시)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 한 경우 등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등에서 정한 경우 그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 판례는 국세청장 훈령형식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86누484), 지방자치단체장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2000두7933)등에 대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

- 다만, 행정조직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위반에 해당

■ 비례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 ·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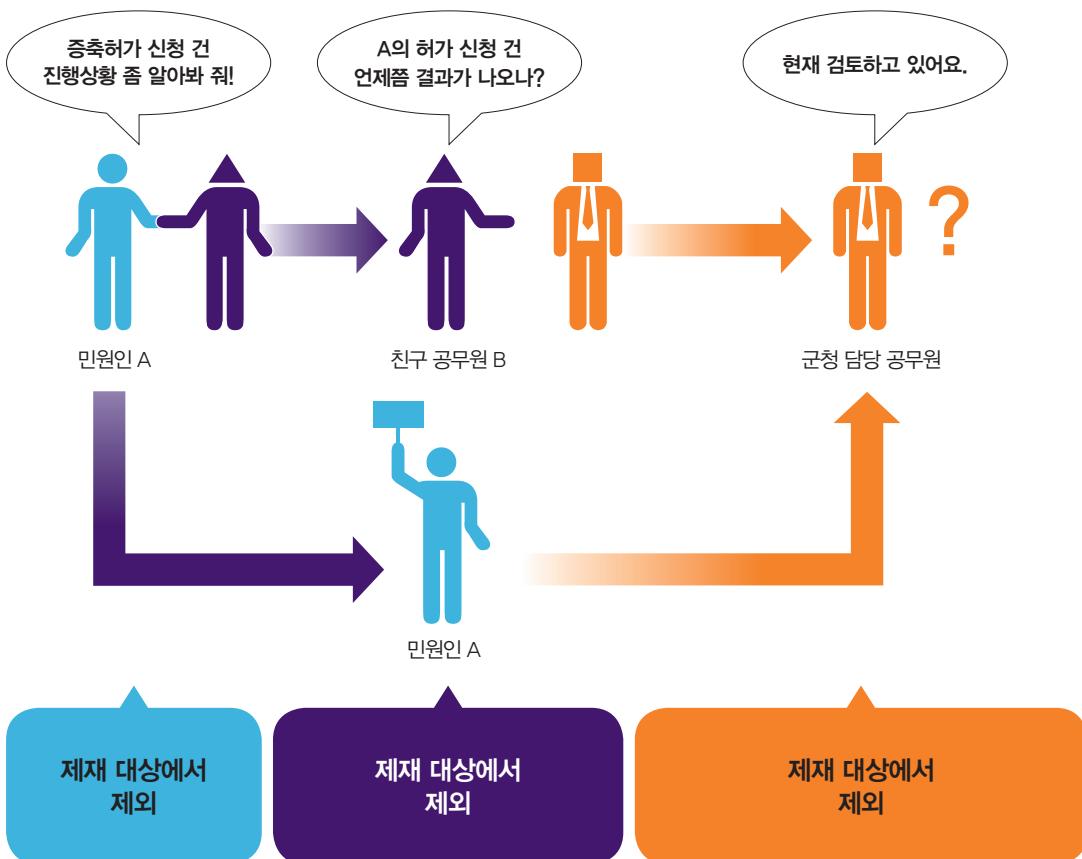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부정청탁 예외사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 ▶

-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 ·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민원인 A가 친구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 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
- 또한, 민원인 A가 증축 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역시 부정청탁 예외사유(법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
 - ‘공개적으로’는 물리적 ·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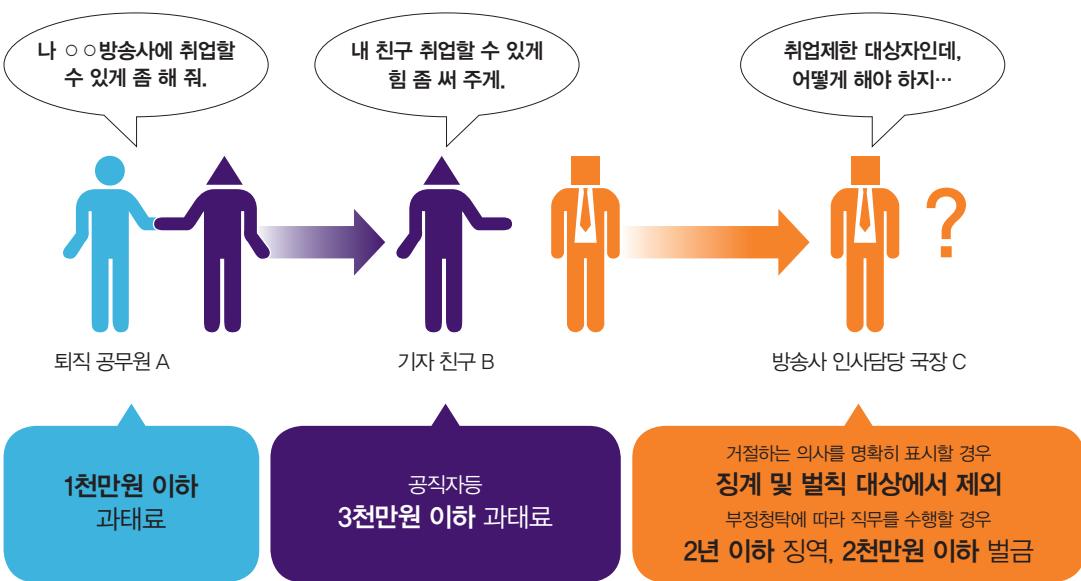
법 적용 대상 관련 사례

사례

1.

언론사 취업 관련 부정청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A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방송에 취업하고자 하였음.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을 청탁한 경우



-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와 그 대표자와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
 -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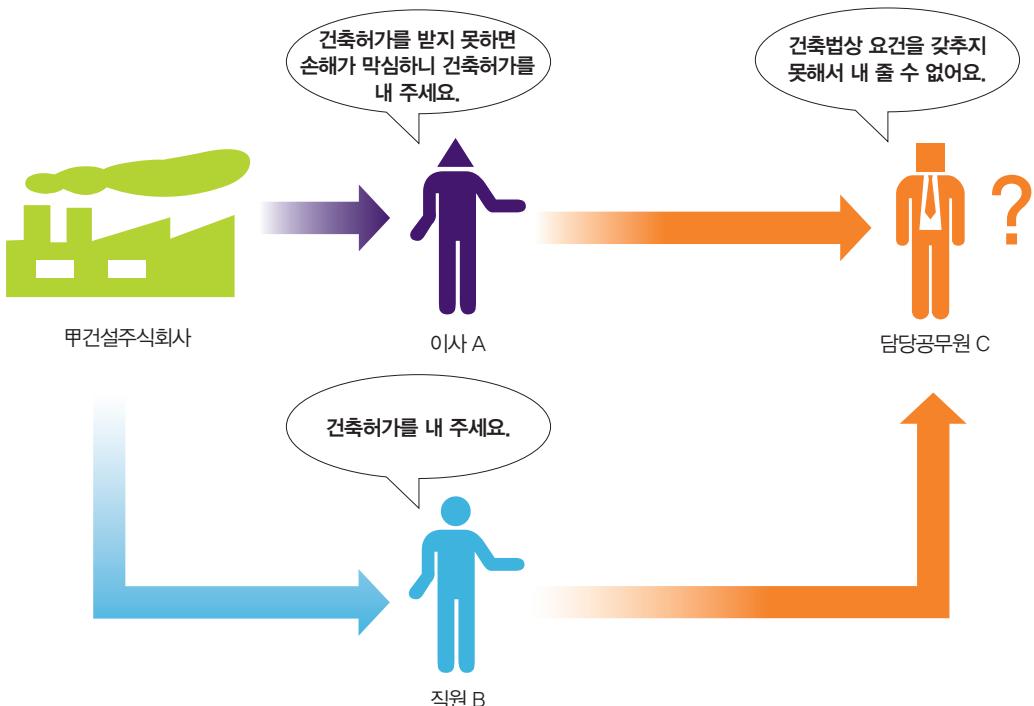
- 공직자윤리법령상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채용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 공무원 A는 취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기자인 친구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연고 · 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인사담당 국장 C가 기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인사담당 국장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인사담당 C가 기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퇴직 공무원 A를 채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법인 소속 임원의 부정청탁

甲건설(주) 소속 이사 A가 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 C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C는 거절하였음. 이에 다른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축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부정청탁의 금지 ▶

- 이사 A와 직원 B가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청탁이 아니라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甲건설(주)은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 부정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 A, B는 甲건설(주)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으로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 · 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임직원 A와 B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甲건설(주)는 임직원 A, B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다만,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 담당공무원 C는 이사 A가 최초로 한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음
 - 다만, 직원 B로부터 거절의사를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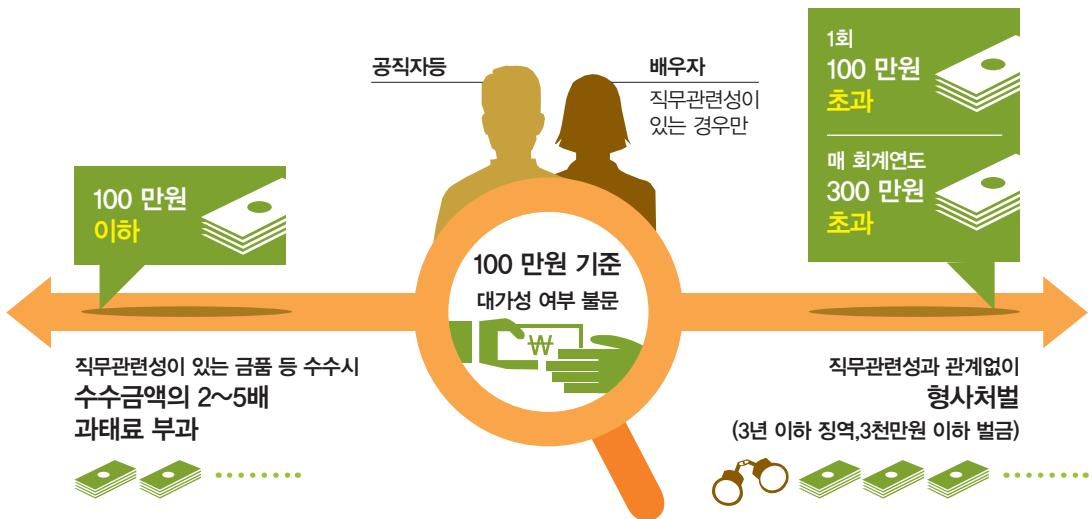
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개요

- 공직자등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
- 기존 「형법」상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 공직자등에게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재는 아닐지라도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 그 이하 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
- 한편, 청탁금지법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다만,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 법률의 내용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들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직자들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1.

회계연도 관련 사례

-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 ○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의 의미

- 회계연도는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
-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되는 것이 일반적임
 -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 ※ 법상 학교의 회계연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인회계 등)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들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한편,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례

2.

1회의 의미 관련 사례

- ○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 ◇ ◇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1. 대표 C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 회계법인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의 의미

-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를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음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음식물 · 주류 등의 접대 · 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하지만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공기관 직원인 A와 B가 회계법인 대표 C로부터 각각 받은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각 120만원(식사비용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3명) 상당의 접대를 받았음
 - 공공기관 직원인 A와 B는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각각 받았으므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였음
- 공공기관 직원 A와 B가 직무관련자인 대표 C로부터 같은 날 저녁에 연속하여 받은 식사, 술 등의 접대를 1회로 평가 가능한지의 문제
 - 공공기관 직원 A와 B가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접대받은 식사 및 술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
- 또한, 제공자인 ◇◇회계법인의 대표 C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대표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회계법인도 형사처벌(벌금) 대상

사례

3.

여러 종류의 금품등 제공 사례

중앙부처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 공무원 A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기업 임원 B로부터 받은 70만원 상당의 접대와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2회에 걸쳐 수수
- 공무원 A와 대기업 임원 B는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고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1회로 평가하기 곤란
-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공자 대기업 임원 B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제공하였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사례

4

동일인 관련 사례

○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동일인의 의미

- 금품등의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는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축사 A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 식사의 합계)을 받았음
 - 건축사 A는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건설회사(주)임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건축사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다만,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건설회사(주)도 임직원 B, C, D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다만,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사례

5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사례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A는 B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음)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등을 받은 동기 및 받은 금품등의 사용 용도는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
 -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도865 판결).
- 공무원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 A가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법 위반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의사 B는 공무원 A에게 1회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한 지연 · 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공무원 A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법 제8조제3항제5호)
 - 또한, 의사 B가 제공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법 제8조제3항제8호)

사례

6.

고액의 선물 사례

-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사례

1.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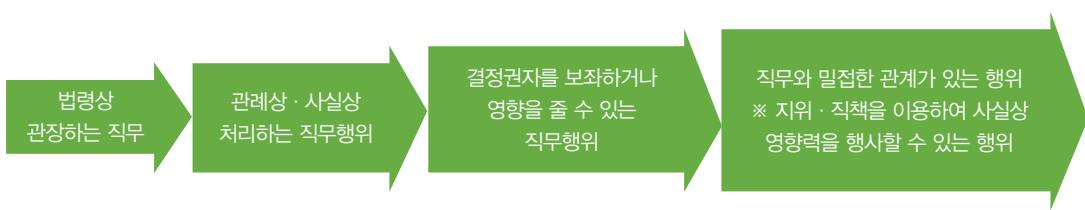
○ ○ 구청 위생과 공무원 A는 ○ ○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 요식업자 B는 공무원인 A가 근무하는 ○ ○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공무원 A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요식업자 B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의 가액기준 3만원 · 5만원을 초과하여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참고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직무의 범위

- 「형법」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직무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함
 -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직무 범위



사례

2.

수수 금품의 불우이웃 성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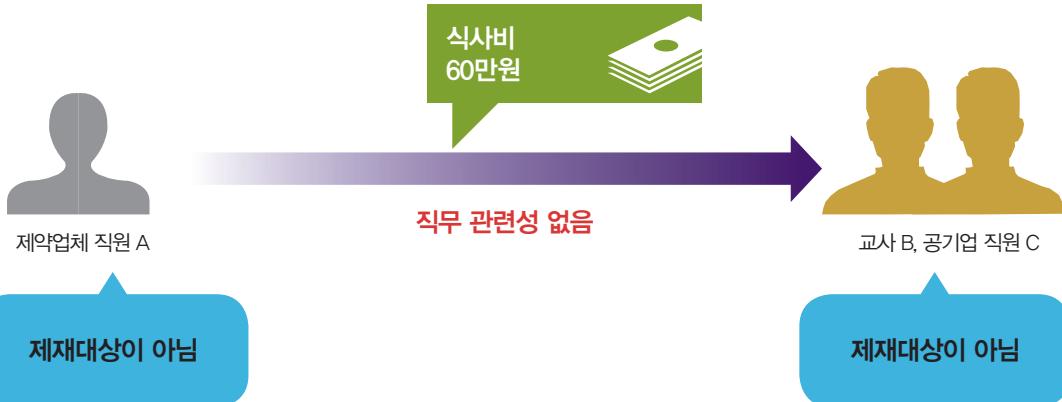
○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B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A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교사 A는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 학생지도 등을 직무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있음
- 교사 A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 B로부터 받은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 성립
- 교사 A는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학부모 B는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사 A와 학부모 B의 관계,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음

사례
3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사례

4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 공무원 A가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무원 A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 · 주류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B는 공무원 A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5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인 A는 영업본부장 B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B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C와 식사를 함께 하였음. 영업본부 직원 A는 계약업체 직원 C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C가 60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 A는 영업본부장 B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 영업본부 직원 A는 계약업체 직원 C로부터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계약업체 직원 C는 영업본부장 B가 재직하고 있는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므로 영업본부장 B와 계약업체 직원 C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영업본부장 B는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C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99도5924)
- 계약업체 직원 C는 직무와 관련하여 영업본부장 B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3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사례

1.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 1)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한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을 향유·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제재

1)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님

2)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음
 -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

3)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음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사례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 1) 과장 A의 배우자 C가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과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2) 과장 A의 배우자 C가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과장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과장 A의 배우자 C가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과장 A가 알고 신고한 경우

1)의 경우

- 과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과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따라서 과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님

2)의 경우

- 과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과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음
 - 과장 A의 배우자 C가 오페라감독 B로부터 받은 초대권이 1회 100만원 이하이므로 과장 A는 과태료 부과 대상

3)의 경우

- 과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과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음
 - 과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사례

3

배우자의 금품 수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의 배우자 B는 고위공무원 A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화 제작자 C로부터 경매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고위공무원 A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고위공무원 A는 배우자인 B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자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고위공무원 A의 배우자 B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1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여부 검토 필요
 - 이는 중여를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외형상의 행위(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고 숨겨진 행위(은닉행위)인 중여만 유효
 - 매매는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고 유효한 행위인 중여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 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 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고위공무원 A의 배우자 B는 고위공무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화 제작자 C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음
 -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A의 직무는 영화 제작자 B와 관련성이 있음
-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영화 제작자 C는 고위공무원 A의 배우자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사례

1.

사립학교 교사 금품 수수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함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그 장 및 교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
 -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 만약,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총지)을 받은 경우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

사례

2

외국인의 금품 제공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 한다.
 - ※ **형법** 제2조(국내법)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하고,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5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국립대학교 교수 A도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
-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됨
-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사례

2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다만, 공무원 A가 받은 경조사비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4호)
 -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5호)
-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 B와 동창회장 C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



사례

3.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과 기념품

○ ○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 ○ ○ 이동통신사가 개최하는 공무원 A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공무원 A는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음
 - 태블릿 PC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받은 공무원 A는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6호)
 -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 범위, 행사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범 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7호)
 - 기념품 ·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
 - 공무원 A가 받은 태블릿 PC는 제작 목적(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 가액(60만원 상당의 고액)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A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A는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4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사립대학교 교수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 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甲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

- 사립대학교 교수 A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
 - 교수 A가 받은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사례

5.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사회상규의 의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

※ 「형법」 제20조에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

-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 직원 B와 사무관 A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님
 -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 필요

참고

1

국내·외 반부패 입법례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CONTENTS

1. 국내 반부패 입법

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	103
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06

2. 해외 반부패 입법

가.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 동향	110
(1) OECD 뇌물방지협약	110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11
(3) APEC 반부패 투명성 회의	113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113
나. 국가별 반부패 입법	114
(1) 미국	114
1)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	114
2)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116
(2) 영국	116
(3) 독일	117
(4) 싱가포르	117
다.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118

1

국내 반부패 입법

공직의 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공직윤리 확보 및 부패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있다.

가장 오랜 연혁을 지닌 「공직자윤리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각각의 법률은 저마다의 고유한 제도를 지닌 독립된 법이지만, 공직자의 청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 가지 법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

(1) 공직자윤리법

우리나라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공직자들의 생활지표가 될 수 있는 행동강령으로서 공무원 윤리현장이 제정되었고,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선물신고 및 퇴직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1983.1.1. 시행)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개혁의지 실천을 위하여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등록재산 공개의 제도화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규제하고,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 1월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재산공개자의 주식투자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고지 거부 사전허가제 등을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조정하고 2011년에는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연장,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확대 등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점차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1996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이후, 제15대 · 제16대 국회에 걸쳐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2002.1.25.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2005년 7월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등 「부패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29일 기존의 국민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2.2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3) 청탁금지법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유발 구조 · 관행에 대한 법 · 제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22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안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 중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5년 3월 27일 제정(2016.9.28.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그간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접대 등의 관행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부패 예방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도입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하에서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더불어 공직사회 전반에 상호신뢰에 기반한 청렴문화를 형성하여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부패 관련법 제정 연혁〉

연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윤리헌장 제정·선포(1980) ●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 - 재산등록제도,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1993) -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및 공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1996)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1) - 주식투자내역 신고 의무화 등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5) - 주식백자신탁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법」 제정(2001)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 「부패방지법」 개정(2005) -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2008)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개정(2014) -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 연장(3년) 및 업무관련성과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입법 필요성 제기(2011)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2012) ● 「청탁금지법」 제정(2015)

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이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주요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물신고’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 포함)이 외국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을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에는 우호증진을 꾀하고 공무원에게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이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의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한 모든 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전관예우, 로비 등에 따른 직무수행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공직자윤리법」 전반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는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미등록, 불성실한 재산등록 등을 사유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등록 거부, 주식백지신탁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이 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의무’로서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지며,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또는 시정을 해야 하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 수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행위 금지,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확인 후 감사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보장,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호·보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이 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 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패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며, 부패방지 업무상 비밀누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로 구분된다.

부정청탁의 금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의 수수를 제한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 포상금 등 신고자를 위한 보호 · 보상 제도도 마련하였다.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법 위반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무화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반부패 관련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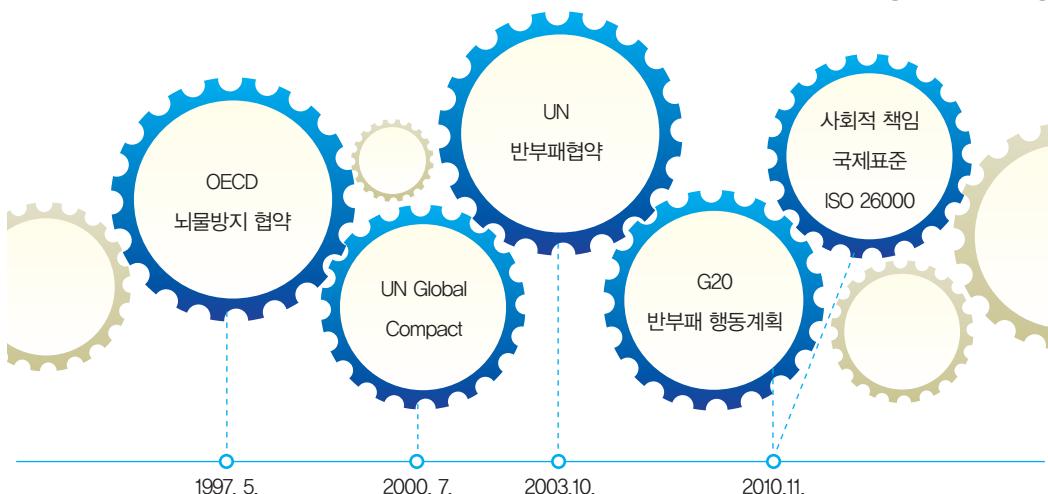
구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및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주요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헌법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주요 대상자	공직자(공직유관단체 구성원 포함) 및 공직후보자, 퇴직공직자 *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일부 적용	공직자(공직유관단체 구성원 포함)	공직자 및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적용
주요 업무기관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규율 사항	- 재산등록 및 공개 - 주식백지신탁 - 선물신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 공직자 행동강령 - 국민감사청구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수수 제한)
벌칙규정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시정권고 기능 -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법 위반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의무화 -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가.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 동향

부패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며, 부패가 더 이상 한 나라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현상¹⁾이라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에서도 UN, OECD 등 국제기구와 G20, APEC 등 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반부패 관련 논의 및 국제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자국의 부패 관련 법제도 마련, 시행을 통해 부패방지 관련 규범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부패 인식에서 탈피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각국의 반부패 활동이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부패와 공공, 민간부문이 상호 연계된 부패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요 국제기구, 경제협의체에서의 반부패 논의 동향 및 각국의 반부패 관련 동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정 관련 해외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청탁금지법추진배경



(1) OECD 노불방지협약

OECD 노불방지협약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노불공여자 처벌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기준 34개 OECD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

리카 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을 포함한 4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는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여부를 심사하는 1단계 심사를 받은 데 이어 2004년 11월 호주와 핀란드를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제2단계 심사를 받았다. 2011년 10월 핀란드와 이스라엘을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이행을 심사하는 제3단계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3단계 심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 국제협약 논의에서 벗어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다.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동 협약의 목적이라 하겠다.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협약에 대한 서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 12. 14. 발효되었다. 현재는 175개국이 당사국으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2. 29. 동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이 동의되었으며, 2008. 4. 26. 발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패예방 전담기구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국가별 부패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부패행위의 범죄규정화 및 법집행, 부패자산 환수 및 부패사범 인도를 위한 국제공조, 부패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부패의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에 한정되었으나 동 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를 아우르며, 부패에 대한 예방과 함께 처벌적 조치를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을 통해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법공조와 자산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전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협약은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 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 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부패의 범위를 공적 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 분야에 한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아울러,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규정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은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 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 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제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 부패방지기구 설립 /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 사회의 참여 / 자금세탁방지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 민간부문의 부패 / 법인의 책임 / 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 사법공조 / 법집행 협력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 재산의 직접 회복 /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자산의 처분과 반환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 부패 관련 정보의 수집 · 교환 · 분석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 사무국
제8장	최종 조항	분쟁 해결 / 서명 · 비준 · 수락 · 승인 및 가입

(3) APEC 반부패 투명성 회의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03년부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 칠레와 공동으로 APEC 내 반부패 협의체 설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 선언’과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됨으로써, 2005년 9월 한국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가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G20 차원의 공통적 인식하에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로 반부패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G20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결실로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정상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하여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시 합의된 2011~2012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계·발전시켜 2013~2014년,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작성되고 G20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하고 동 이행 성과를 정상에 '제4차 이행점검보고서'로 제출함에 따라 G20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4년 ACWG 공동 의장국인 호주가 작성한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과 금년도 반부패 관련 성과를 요약·정리한 브리즈번 반부패 업데이트가 2014. 11월 정상회의의 부속서로 채택되어 반부패에 대한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1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
2	OECD 뇌물방지협약 포함 뇌물 범죄 척결
3	"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증진 고위급 원칙" 이행 및 이행 성과 공유
4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 위험 해결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행동 실시
5	공공부문 투명성 및 청렴성 모범 관행 벤치마킹
6	부패수익 환수 및 반환, 부패범죄 수사공조 및 피난처 제공 거절 등 국제협력 강화
7	중소기업 대상 반부패 교육훈련 개발, 부패 관련 신고 장려 등 민간부문과 지속 협력

특히, G20 행동계획에서는 민간부문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G20 각국 정부의 반부패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 반부패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강력한 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패 관련 법률 위반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국가별 반부패 입법

(1) 미국

1)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미국에서의 뇌물죄는 세관공무원의 혜유통관 묵인행위와 사법부 재판관들의 법원에서의 유리한 결정을 대가로 한 경제적 이득취득의 재재에서 시작하였으며, 1853년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연방공무원으로 확대되었고, 1863년에는 대가와 관계없이 단순 경제적 이득제공행위(Illlegal Gratuity) 자체를 처벌하였다. 1961년에는 뇌물(Bribery)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인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는 미 형법 제18편 제201조부터 제227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금품수수 금지(제201조(a)), 불법사례 수수 금지(제201조(c)) 외에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는 것을 금지(제209조)하고 있다.

제201조에서 뇌물죄와 불법사례수수죄를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뇌물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며 뇌물과 공무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뇌물죄와 유사한 반면, 불법사례수수죄는 공무의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 수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부패의 고의를 요하는 뇌물죄와는 달리 공무와의 관련성만을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뇌물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수수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상당히 엄한 수준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9조에서는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정부윤리청(OGE)은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18USC) 제209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경우 충성심의 분열(Divided Loyalty)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직 수행이 외견상 부정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09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뇌물죄와 불법사례수수죄, 공무 외 소득금지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비교〉

죄명	주체	객체	고의	행위 유형 및 조건	처벌
뇌물죄 제201조 (a)	공무원, 공무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된 자, 기타 정부기관의 고용인, 공무를 의뢰받은 사업자 대표 등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 / 이익 제공자 또는 제공 약속자	유·무형,	부패 고의 요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으려는 의사)	이익의 제공, 수수 또는 약속 공무와의 대가관계 필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수수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벌금
불법사례 수수죄 제201조 (c)		주관적 경제적 이익 및 가치	부패의 고의 불요	이익의 제공, 수수 또는 약속 직접적인 대가관계 불요(공무와 연관성만 입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공무 외 소득금지죄 (제209조)	연방공무원 및 보수 제공자		공무서비스와 관련하여 받는 일체의 보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2)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미국의 경우 「행정절차법」 등에서 일부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한다. 법관 윤리강령에 따른 법관의 일방당사자 접촉금지 원칙이 행정절차법으로 넘어와 행정부의 재판관(Administrative Judge) 역시 양방당사자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공식적으로 양방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 외에 일방당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Subchapter II)」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공직자 또는 행정부의 재판관 등에게 일방접촉(ex, Parte Communication)하는 행위를 금지(제557조 (d)항)하고 일방접촉이 있는 경우 공식기록에 기재, 타방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방접촉이 직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 몬타나, 메인 등 개별 주 형법에서도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동 내용은 미국의 모델 형법(Model Penal Code)에 근거하는 것으로 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 영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뇌물방지법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처벌 수위도 높다.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 미국 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이 뚜렷한 특징이다.

「뇌물방지법」의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기업이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 관계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벌금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행지침에는 기업들이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충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

뇌물 위험도에 비례하는 뇌물방지 절차 수립, ▲최고경영진의 실천의지 표명, ▲뇌물 위험도의 평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조치의 시행 등 여섯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제시되어 있다.

(3) 독일

독일은 「형법」에서 부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이익수수를 금지하는 수뢰죄(제332조) 외에,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익수수죄(제331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공직자 또는 특정한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을 대가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약속·수령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제332조), 공직자 또는 특정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약속·수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331조).

(4) 싱가포르

싱가포르 부패방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은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 Act)」이며, 이 법에 근거해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부패방지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960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부패행위조사국 직원들은 부패혐의자를 조사, 체포할 수 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에서는 ‘뇌물(Bribery)’이라는 용어보다는 ‘부패한 사례(Corrupt Grafit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금전이나 선물, 대출, 보상, 사례금, 금전적 이익, 계약, 서비스 제공, 특혜 제공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부문에도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 혹은 특정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이나 혜택을 받은 경우, 이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행위가 공무원과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관련 규정	선물 수수 금지 내용	예외사유
미국	연방공직자 표준 윤리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 또는 공직자의 지위 · 직책으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수수 금지 * 금지된 출처(prohibited source)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자 – 공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선물수수 금지 – 금지된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시장가치를 지불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20USD 이하, 연간 50USD 이하의 선물 – 가족, 친구 등 사적 관계에 근거한 선물 – 모든 공직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 등 <p>– 1회 10USD 이하의 선물</p>
영국	Civil Service Code 각 부처 및 런던 시 자체 행동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 개인의 분별력,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혜택을 어떤 제3자에게서도 수령 금지 (선물 허용 금액 기준은 없음) – 다만, 각 시 및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 · 접대 수수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40USD) 이상의 선물 · 접대에 대해 관리자(Monitoring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나는 경우 해당 선물 · 접대의 제공자, 물품명, 가격 등을 28일 이내에 신고 *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선물 · 접대를 거절, 반납한 경우까지 선물 · 접대 등록 시스템에 기록 – 영국 외부무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약 47USD) 이상의 선물 · 접대 수수 금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경우 25유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설정을 고려하여 선물수수 기준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구분	관련 규정	선물 수수 금지 내용	예외사유
캐나다	이해충돌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은 공직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선물 또는 각종 혜택의 수수를 금지 - 선물 또는 혜택이 1,000CAD(약 750 USD) 이상인 경우 몰수 조치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은 동일인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선물 또는 혜택의 총 가치가 200CAD(약 150USD)를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신고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은 1회에 200CAD(약 150USD) 이상의 선물 또는 혜택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자와 정황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친구 또는 친척이 제공하는 경우 - 공직자 지위에 수반하는 관례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p>* 구체적 금액기준은 없음</p>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법 및 윤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부동산 증여, 금전 대부, 무상 용역 제공, 향응, 여행 접대 수수 금지 -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향응 접대를 반복해서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서 향응 접대, 재산상 이익 수수 금지 - 중간급 및 고위직 공직자(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는 5,000엔(약 50USD)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선물 신고처(gift register)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 공개된 파티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음식물, 식사 - 직무로 참가한 회의, 회합에서 제공되는 다과, 간소한 음식 등 - 방문 시 제공되는 물품의 사용, 업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용 등 - 신고 대상이 되는 선물 금액 기준은 선물·향응 수수 금지 기준을 참고해 적용
싱가포르	행동강령	- 공직자가 제공받는 모든 선물은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50SGD(약 40USD) 미만의 선물은 허용

해외 반부패 입법 ▶

구분	관련 규정	선물 수수 금지 내용	예외사유
대만	부패방지위원회 윤리 가이드라인 (AAC's Ethics Guideline)	–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선물 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500TWD (약 17USD) 이하의 선물 *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1,000TWD (약 33USD) 이하의 선물 * 약혼식, 결혼식 때 제공되는 3,000TWD (약 100USD) 이하의 선물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금지. 3,000TWD (약 100USD)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선물은 반드시 신고 * 다만,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가 제공하는 선물은 신고 없이 수수 가능

참고

2

청탁금지법 조문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事實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

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 화 : (044) 200-7621 FAX : (044) 200-7939

디자인 · 제작 : 디자인 파콕 (02) 790-3092

